

세계가 찾는 제주, 세계로 가는 제주
The World Comes to Jeju, and Jeju Goes to the World

- 『바람』 과 『신·재생에너지』 로 『제주의 미래』 를 이끌어 나간다 -

풍력발전설비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및 청정소화기 구매 규격서

2017. 11.



제주에너지공사
JEJU ENERGY CORPORATION

풍력발전설비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및 청정소화기 구매 규격서

1. 구매 개요

- 1) 구매명 : 풍력발전설비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및 청정소화기 구매(설치조건부)
- 2) 구매수량 : 자동소화장치 16식, 청정소화기(고정용브라켓 포함) 34대
- 3) 납품기한 :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
- 4) 납품장소 :
 - 가.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행원풍력발전단지 일대
 - 나.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가시리국산화풍력발전단지 일대
 - 다.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동복리 동복·북촌풍력발전단지 일대

단지	호기	발전기 높이	발전기 나셀체적	자동소화장치 설치수량	청정소화기 설치수량
행원	4호기	80m	200m ³	2식	-
	5호기	70m	100m ³	1식	1대
	6,8,10-15호기	45m	-	-	각 1대(총 8대)
가시리	1,3,6호기	50m	30m ³	각 1식(총 3식)	각 1대(총 3대)
	2,4,5호기	50m	90m ³	각 1식(총 3식)	-
	7-13호기	70m	100m ³	각 1식(총 7식)	각 1대(총 7대)
동복	1-15호기	80m	-	-	각 1대(총 15대)

2. 목적 및 용도

풍력발전설비 나셀체적에 맞도록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고 풍력발전설비 나셀에 청정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여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함

3. 계약자 준수 및 특기사항

- 1) 제품의 규격은 물품구매 명세서 상의 규격과 동일한 규격품으로 납품해야 하고 제품은 반드시 신품이어야 한다.
- 2) 납품한 제품의 상태가 불량(파손, 변질)하거나 본 구매규격서의 제품과 다

를 경우 반품 조치하고 재 납품하여야 한다.

- 3)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.
- 4)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물품구매 명세서에 누락, 오류, 추가 등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제주에너지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의 변경 요구가 있을 시 상호 협력하여 이행하되 납품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공사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며, 이에 따르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시행한다.
- 5) 납품한 제품의 품질에 위배사항 발생 시 공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한다.

4. 납품 조건

- 1) 본 구매 규격서에 따른 물품 납품 시 운송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손상된 제품은 즉시 신제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.
- 2) 납품일 기준은 계약 시 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- 3) 납품 장소는 공사에서 별도 정하는 장소로 한다.

5. 납품 및 현장 물품검수

- 1) 상차 및 하역작업 또는 운송 시 발생될 수 있는 제반 위험에 견딜 수 있도록 개별 포장하여야 하며, 운반도중 충격을 흡수하고 흔들림을 방지하도록 한다.
- 2) 납품검사 시 감독관에게 인계할 경우 부적절한 준비로 인한 제품의 모든 파손 책임은 계약대상자에게 있다.
- 3) 납품 제품에 대해서는 수량, 재질, 외관, 기타 등의 확인검수를 받아야 한다.
- 4)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공사의 확인검수 없이 임의적으로 하차를 한 경우에는 납품된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또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
- 5)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현장 및 풍력발전기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감독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6)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협의하여 설치 위치를 선정하고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

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.

6. 품질보증

- 1)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3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.
- 2) 납품이 완료된 물품이라도 사용 후 성능 및 기능이 불확실한 사항이 생길 경우 계약상대자는 결점을 보완하여 즉시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.
- 3) 계약상대자가 공사에서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, 공사에서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대를 공사에 반납해야 한다.
- 4) 하자범위
 - 가. 운송, 포장 불량으로 인한 결함
 - 나. 납품된 제품이 정품이 아닌 비품 또는 비규격품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
 - 다. 정품이 아닌 비품 또는 비 규격품 사용으로 인한 설비의 손상 및 파손을 초래한 경우, 공사는 이에 상응하는 복구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7. 안전관리

- 1) 계약상대자는 과업 전 과업수행자에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(휴대)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- 2)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작업자 및 제3자에 대한 안전사고의 모든 관리 및 사후 배상 등 일체의 책임과 시설 파손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.
- 3) 고소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대 등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.

8. 제출서류

- 1) 사진대장 2부

9. 물품구매 명세서

1) 물품 규격

번호	품명	규격	단위	수량	기타
1	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화제질량: 3,000g 이상 - 방호체적: 30m³ 이상 - 방출시간: 23초 이상 - 동작온도: 93°C(±5%) - 자가발전작동방식 - 자가발전작동장치(감지부) 각 1대 포함 - 작동확인용 A접점 기능 	식	3	설치조건부
2	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화제질량: 9,000g 이상 - 방호체적: 95m³ 이상 - 방출시간: 23초 이상 - 동작온도: 93°C(±5%) - 자가발전작동방식 - 자가발전작동장치(감지부) 각 3대 포함 - 작동확인용 A접점 기능 	식	13	설치조건부
3	청정소화기 HCFC-12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화약제중량: 3kg - 소화약제 주성분: HCFC-123 - 총 중량: 5.4~5.5kg - 소화능력단위: A1, B2, C - 방사거리: 3~4m - 방사시간: 11초 이상 - 사용온도범위: -20~40°C - 형식 및 재질: 축압식/스테인레스 - 원산지: 국산 - 소화기 고정용 브라켓(벽고정용) 포함 	대	34	풍력발전기 고정용 브라켓 포함 및 설치조건부

가. 자가발전 작동장치(감지부)는 93°C(±5%) 감지 후 작동하여야 한다.

나. 소화기 본체와 감지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감지부는 추가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.

다. 자동소화장치는 별도의 전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작동하여야 한다.

- 라. 자동소화장치 설치 시 자동소화장치의 작동신호를 보낼 수 있는 케이블을 풍력발전시스템과 연결하여 사용자가 자동소화장치의 작동 유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마. 자동소화장치는 A급 화재 및 B급 화재에 똑같이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.
- 바. 고체에어로졸 소화약제는 인체에 무해하여야 한다.
- 사. 고체에어로졸 소화약제는 방출 후 기계 및 전기 설비 등에 2차적인 피해가 없어야 한다.
- 아. 자동소화장치는 생산물 배상책임(PL)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.
- 자. 자동소화장치는 KFI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.
- 차. 청정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품이어야 한다.
- 카. 소화기 고정용 브라켓은 청정소화기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하며, 어느 정도의 진동에도 견고히 장착될 수 있어야 한다.
- 타. 자동소화장치의 방호체적은 설치대상(풍력발전설비 나셀) 체적의 95%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.